서울특별시 종로구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5. 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4월 25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6년 4월 26일 원안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6. 5. 3)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김연수)

가. 제안이유

○ 대학로문화지구내 제1종 권장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시설 보호 · 육성에 기여하고,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근거를 명확히 하며, 주택이 별도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학로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하여 승인된 관리계획에 의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7조의3).

○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이 별도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주택을 분리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13조제2항).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김 충 식)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質疑 및 答辯 要旨 (생 략)

5. 討 論 要 旨 (없 음)

6. 修正案의 要旨 (없 음)

7.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